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영 관리지침」에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는 지하역사에 대한 유지 기준만 있고 철도차량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영 관리지침」
을 반영하여 대중교통차량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